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08. 10. .

건설문화위원회

1. 심사 경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8년 10월 6일

○ 회부일자 : 2008년 10월 7일

상정일자 :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8. 10. 14 :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방재국장 송영화)

제안 이유

○ 하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개정·시행(2008. 4. 7)됨에 따라 현행 하천법령에 맞도록 조례전부개정 하고자 함

주요 내용

○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변상금을 정함(제2조)

○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10%이상 증가시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·조정토록 함(제3조)

○ 재해시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정함(제4조)

-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 및 방법을 정함(제5조)
- 점용료 등의 반환금 계산 방법을 정함(제6조)
- 점용료 징수행위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 및 교부율 정함(제7조)
- 징수금 교부시기를 정함(제8조)
-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세조례를 준용하도록함(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문화전문위원회 운영 해)

-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하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
- 종전의 조례로 정하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등 주요사항을 하천법 시행령에 정함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이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하천법」 제37조제4항에 따라 하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점용료 등의 산정기준) ① 「하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하천수사용료는 「하천법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5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③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제3조(점용료 등의 조정)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점용료 등의 감면)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영 제44조를 적용하며,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서 “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해율이 100분의 30 이상부터 100분의 50 미만의 경우 : 30%
2. 재해율이 100분의 50 이상부터 100분의 80 미만의 경우 : 50%
3. 재해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: 100%

제5조(점용료 등의 징수)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,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할 때 징수하고,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징수한다.

② 매년 점용료 등의 징수는 영 제42조제2항을 따른다.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, 채취료의 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6개월씩 균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

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매년 1월과 7월에 납부한다.

③ 골재 채취료를 제2항에 따라 납부하던 중 제2조제1항의 별표1 제5호에 의한 채취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,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 분할 납부한다.

④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.

⑤ 점용료 등을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
제6조(점용료 등의 반환)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. 다만, 법 제70조에 따라 허가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.
2.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또는 폐구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.
3.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석 및 사력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양에 대한 채취료만 반환한다.

② 제4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,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.

③ 잘못 납부된 점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에는 영 제78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
제7조(징수의 위임) ① 도지사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해당 하천을 관리하는 시장, 군수에게 위임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, 군수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금을 교부한다.

1. 점용료 등의 징수 : 징수금액의 100분의 30
2. 점용 등의 허가과 점용료 등의 징수 : 징수금액의 100분의 50

제8조(징수금의 교부) 징수교부금은 매분기 중에 도에 납입한 기준으로 각 분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. 다만, 출납정리 기간 중에 도에 납입한 요금의 징수 교부금은 다음연도 예산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요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충청북도세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이미 산정된 점용료 등은 이 조례 시행년도 말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한다.

[별표 1]

점용료등 산정기준표(제2조제1항 관련)

구 분	산 정 기 준												
1. 공작물의 설치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	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/100												
2. 토지(하천부지)의 점용	<p>가.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: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/100</p> <p>나.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: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.5/100. 다만,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립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다. 광업(골재채취는 제외한다)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: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.5/100. 다만, 하천구역 내의 토석·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.</p> <p>라.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: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.75/100</p> <p>마.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: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.5/100</p> <p>바. 야적장을 위한 점용: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/100</p> <p>사.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: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.5/100</p>												
3. 하천시설의 점용	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.												
4. 선박 등의 운항	<p>가.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(차량도선은 배액)</p> <p>1) 갑지: 월액 20,000원</p> <p>2) 을지: 월액 10,000원</p> <p>3) 병지: 월액 6,000원</p> <p>※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</p> <p>나. 5톤 이하 유선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지역등급</th> <th>동력선</th> <th>무동력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) 갑지</td> <td>월 100,000원</td> <td>월 50,000원</td> </tr> <tr> <td>2) 을지</td> <td>월 60,000원</td> <td>월 30,000원</td> </tr> <tr> <td>3) 병지</td> <td>월 20,000원</td> <td>월 1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/10 가산</p> <p>다.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. 다만,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.</p> <p>라. 고무보트 외에 「수상레저안전법」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,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.</p> <p>1)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: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</p> <p>2)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: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</p>	지역등급	동력선	무동력선	1) 갑지	월 100,000원	월 50,000원	2) 을지	월 60,000원	월 30,000원	3) 병지	월 20,000원	월 10,000원
지역등급	동력선	무동력선											
1) 갑지	월 100,000원	월 50,000원											
2) 을지	월 60,000원	월 30,000원											
3) 병지	월 20,000원	월 10,000원											

	<p>마. 부선(유선시설은 제외한다) 및 골재수송선</p> <p>1) 50톤 미만 : 월액 40,000원</p> <p>2) 50톤 이상 ~ 100톤 미만 : 월액 50,000원</p> <p>3) 100톤 이상 ~ 200톤 미만: 월액 70,000원</p> <p>4) 200톤 이상 ~ 300톤 미만: 월액 90,000원</p> <p>5) 300톤 이상 ~ 400톤 이하: 월액 110,000원</p> <p>6)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,000원씩 가산</p> <p>바.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다.</p>
<p>5. 토석·사력의 채취</p>	<p>가. 당해연도의 토석·사력의 채취료는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·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/100</p> <p>나.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「골재채취법」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</p> <p>다.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가격을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·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.</p>
<p>6. 죽목, 갈대,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</p>	<p>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,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.</p>
<p>7. 스케이트장·유·도선장(유·도선의 모선을 포함한다)·운동장·풀장·대기장 및 탈의장(매점을 포함한다)</p>	<p>토지가격의 5/100</p>
<p>8. 그 밖의 점용 및 사용</p>	<p>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</p>
<p>※ 비고</p> <p>1.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2. 토지가격은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(토지가격비준표)를 사용하여 산출한다. 다만,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3.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/12년으로 하고,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/365년으로 한다.</p> <p>4. 점용면적이 1㎡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총점용면적이 1㎡ 미만인 경우에는 1㎡로 본다.</p>	

[별표 2]

점용료 조정산식(제3조 관련)

산출점용료의 증가율	납부할 점용료
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	전년도점용료 + [전년도점용료×{10/100+(증가율 - 10/100)×3/10}]
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	전년도점용료 + [전년도점용료×{13/100+(증가율 - 20/100)×1/10}]
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	전년도점용료 + [전년도점용료×{16/100+(증가율 - 50/100)×6/100}]
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	전년도점용료 + [전년도점용료×{19/100+(증가율 - 100/100)×3/100}]
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	전년도점용료 + [전년도점용료×{22/100+(증가율 - 200/100)×1/100}]
500퍼센트이상	전년도점용료 + [전년도점용료×0.25]

관계법령 발췌

【하천법】

제37조 (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)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,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 사유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 제1항 제1호·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(생략)

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**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**

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공용·공공용·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
2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
3.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

제50조 (하천수의 사용허가 등) ①~④ (생략)

⑤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⑥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⑦⑧(생략)

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7조 (부담금 등의 강제징수)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·점용료·사용료 및 변상금,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

② (생략)

③ 부담금·점용료·사용료 및 변상금,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제68조 (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)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·점용료·사용료 및 변상금,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
제70조 (공익을 위한 처분 등)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1.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
2.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【하천법시행령】

제42조 (점용료 등의 징수) ①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[별표 3과] 같다.

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 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(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**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** 납부할 수 있다.

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의 100분의 25이내에서 점용료 등을 낮출 수 있다. 다만,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**도의 조례로 정한다.**

제43조(변상금의 징수)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**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**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한다.

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.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**도조례로 정한다.**

제44조(점용료 등의 감면)① 법 제37조 제5항 제1호에서 “공요·공공용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
2.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,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
3. 국가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·보수공사를 위한 경우
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
5.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경우
6.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

② 법 제37조 제5항 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전기공급시설, 전기통신시설, 송유관,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 시설을 설치하기위한 사업을 말한다.

③ 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법 제37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: 전액면제
2. 법 제37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: 2분의 1감면
3. 법 제37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: 재해나 그 밖의 특별 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

제57조(하천수사용료의 징수)① 법 제50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1. 발전용수 : 1일 100m³에 대하여 연액 231원
2. 농업용수 :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
3.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: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
4. 그 밖의 용수 :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

② 하천수사용료의 **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.**

제58조(하천수 사용료의 감면)① 법 제50조 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 제3항을 준용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.

1. 하천관리청이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
2. 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

제78조(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)

법 제68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”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.

【국유재산법시행령】

제56조의 2(과오납금 반환가산금) 법 제51조의 2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”라 함은 연 6%의 이자를 말한다.

[별표 3]

점용료등 산정기준(하천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)

구 분	산 정 기 준												
1. 공작물의 설치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	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/100												
2. 토지(하천부지)의 점용	<p>가.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: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.5/100</p> <p>나.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: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.5/100. 다만,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립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다. 광업(골재채취는 제외한다)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: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.5/100. 다만, 하천구역 내의 토석·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.</p> <p>라.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: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.75/100</p> <p>마.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: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.5/100</p> <p>바. 야적장을 위한 점용: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/100</p> <p>사.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: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.5/100</p>												
3. 하천시설의 점용	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.												
4. 선박 등의 운항	<p>가.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(차량도선은 배액)</p> <p>1) 갑지: 월액 20,000원</p> <p>2) 을지: 월액 10,000원</p> <p>3) 병지: 월액 6,000원</p> <p>※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</p> <p>나. 5톤 이하 유선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01 1525 1299 1666"> <thead> <tr> <th>지역등급</th> <th>동력선</th> <th>무동력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) 갑지</td> <td>월 100,000원</td> <td>월 50,000원</td> </tr> <tr> <td>2) 을지</td> <td>월 60,000원</td> <td>월 30,000원</td> </tr> <tr> <td>3) 병지</td> <td>월 20,000원</td> <td>월 1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/10 가산</p> <p>다.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. 다만,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.</p> <p>라. 고무보트 외에 「수상레저안전법」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,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.</p> <p>1)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: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</p> <p>2)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: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</p>	지역등급	동력선	무동력선	1) 갑지	월 100,000원	월 50,000원	2) 을지	월 60,000원	월 30,000원	3) 병지	월 20,000원	월 10,000원
지역등급	동력선	무동력선											
1) 갑지	월 100,000원	월 50,000원											
2) 을지	월 60,000원	월 30,000원											
3) 병지	월 20,000원	월 10,000원											

	<p>마. 부선(유선시설은 제외한다) 및 골재수송선</p> <p>1) 50톤 미만 : 월액 40,000원</p> <p>2) 50톤 이상 ~ 100톤 미만 : 월액 50,000원</p> <p>3) 100톤 이상 ~ 200톤 미만: 월액 70,000원</p> <p>4) 200톤 이상 ~ 300톤 미만: 월액 90,000원</p> <p>5) 300톤 이상 ~ 400톤 이하: 월액 110,000원</p> <p>6)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,000원씩 가산</p> <p>바.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 한다.</p>
<p>5. 토석·사력의 채취</p>	<p>가. 해당 시·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·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/100</p> <p>나.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「골재채취법」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</p> <p>다.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·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·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.</p>
<p>6. 죽목, 갈대,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</p>	<p>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,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.</p>
<p>7. 스케이트장·유·도선장(유·도선의 모선을 포함한다)·운동장·플장·대기장 및 탈의장(매점을 포함한다)</p>	<p>토지가격의 5/100</p>
<p>8. 그 밖의 점용 및 사용</p>	<p>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</p>
<p>※ 비교</p> <p>1.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2. 시·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3. 토지가격은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(토지가격비준표)를 사용하여 산출한다. 다만,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·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4.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/12년으로 하고,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/365년으로 한다.</p> <p>5. 점용면적이 1㎡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총 점용면적이 1㎡ 미만인 경우에는 1㎡로 본다.</p>	